

부산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가단314591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7. 12. 19.

판결 선고 2018. 1.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5. 4.까지는 연 6%, 2017. 5. 5.부터 2017. 7. 3.까지는 연 9%, 2017. 7. 4.부터 2017. 7.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사천시 E 전 1,206m²에 관하여 2016.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63,423,1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63,42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사천시 E 전 1,206m²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6.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63,874,1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63,874,1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의 대선조선 주식회사(이하 '대선조선'이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5. 7. 31. 피보험자를 대선조선, 보험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5. 7. 5.부터 2016. 1. 4.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2016. 1. 19. 피보험자를 대선조선, 보험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6. 1. 5.부터 2016. 7. 4.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대선조선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대선조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대선조선은 2016. 8. 11. 원고에게 2015. 12. 2. 시공한 용접결함으로 인한 미상환금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4. 4. 대선조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이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6. 4. 19. 그 처인 피고 C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사천시 E 전 1,20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6. 4. 22. 접수 제108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176,076,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① 사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1억 4,000만 원, ②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사. 피고 C는 피고 D에게 2016.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6. 8. 29. 접수 제231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8.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사남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16. 8. 26. 피담보채무 140,390,852원이 변제되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3, 5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4. 5.부터 2017. 5. 4.까지는 연 6%, 2017. 5. 5.부터 2017. 7. 3.까지는 연 9%, 2017.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7.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피고 B이 피고 C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6. 4. 19.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가 2015. 7. 31.과 2016. 1. 19.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부터 약 4개월 내에 대선조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원고가 대선조선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처인 피고 C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D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남편인 피고 B에게 수년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은, 피고 B의 채무관계나 피고 B, C의 신분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 소문과 전신주 광고를 보고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피고 D은 전신주 광고를 보고 피고 C와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피고 B와 C의 신분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위 금전거래가 드러나자 지역모임과 관련하여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B은 2016. 8.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지받았는데, 피고 D이 그 다음날인 2016. 8. 26.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라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현재 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올라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는 203,814,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에서 말소된 사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390,852원을 공제하면 63,423,148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억 원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액은 63,423,148원이다(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39,939,869원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액이 63,874,131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63,423,148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63,42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기술보증기금이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와 기술보증기금에게 안분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술보증기금이 피고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024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9. 27. 이 사건 증여계약을 63,423,1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기술보증기금에게 63,423,14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D은, 수익자인 피고 C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자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과 전득자인 피고 D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어느 하나의 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그 액수만큼 다른 채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이 부분 피고 D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한성진